



보도 일시	2022. 12. 15.(목) 12:00 (금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12. 14.(수)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현수 (044-201-6678)
		담당자	사무관 금병욱 (044-201-6690)

녹색채권 지침서 개정, 외부검토 등 신뢰성 높인다

-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‘한국형 녹색채권* 지침서(가이드라인)’를 개정하고, 12월 16일 환경부 누리집(me.go.kr)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.

*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채권과 달리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, 외부검토, 사후보고 등 추가 절차 필요

-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채권에 ‘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(가이드라인)’를 적용하여 녹색위장행위(그린워싱)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-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△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, △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, △녹색채권 사후 관리(모니터링) 체계 정립 등이다.

-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,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.

-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,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.

- 아울러,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됐다.
- 환경부는 이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을 위해 올해 산업계 및 금융계와 함께 추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를 비롯해 산업계, 금융계,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.

□ 개정된 녹색채권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먼저, 녹색채권 기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(프로젝트)이 ‘녹색분류체계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‘적합성 판단 절차’를 도입했다.
- 또한, 외부검토키관*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환경·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검토키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*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기관으로, 지금까지는 주로 회계법인, 신용평가사가 수행
- 아울러,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,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사후관리(모니터링) 체계를 정립하여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.
- 이밖에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하여 채권 발행의 편의성을 높였다.

□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“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지침서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,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,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”라며, “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, 이러한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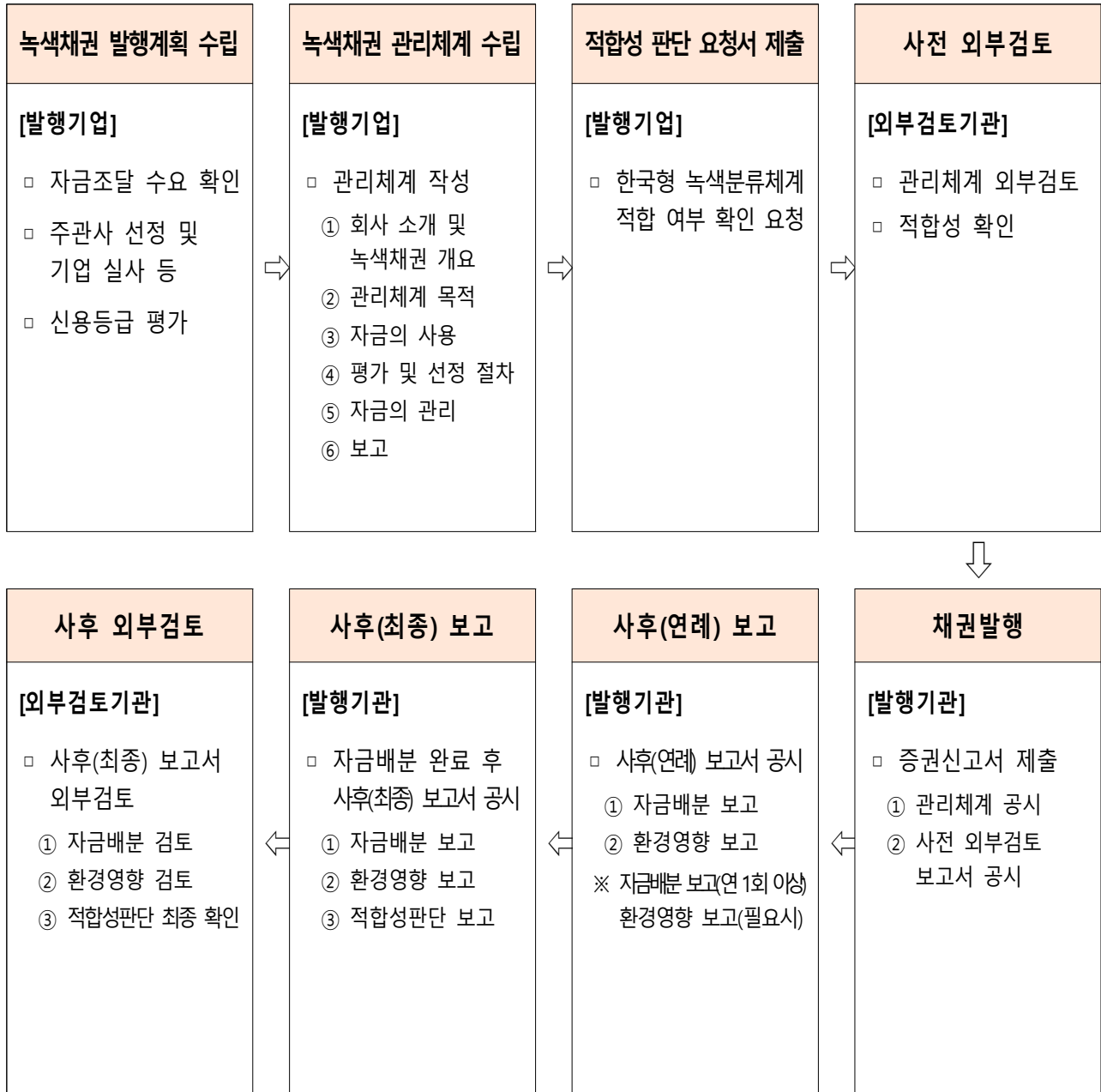
- 붙임 1. 녹색채권 발행 주요절차.
2.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취소요건.
 3. 일반 회사채 및 녹색채권 발행절차 비교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현수 (044-201-6678)
		담당자	사무관	금병욱 (044-201-6690)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	책임자	실 장	곽대운 (02-2284-1960)
		담당자	연구원	최종인 (02-2284-1974)



붙임 1

녹색채권 발행 주요절차


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
등록 요건	○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할 것 ○ 독립된 외부검토 담당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○ 외부검토 담당 조직은 환경 및 금융 분야별 1인 이상,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- 환경·금융 각 분야 인력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								
	<table><tr><th>환경</th><th>금융</th></tr><tr><td>환경*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</td><td>금융**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</td></tr><tr><td>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</td><td>금융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</td></tr><tr><td>학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</td><td>학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</td></tr><tr><td>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</td><td>금융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</td></tr></table>	환경	금융	환경*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	금융**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	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	금융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	학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	학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	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	금융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
	환경	금융									
	환경*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	금융**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									
	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	금융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									
학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	학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										
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	금융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										
* 환경 분야 : 대기, 수질(지하수 포함), 폐기물, 상하수도, 자연환경(생태학 포함), 소음·진동, 토양 보전, 환경보건, 환경정책, 환경관리, 환경기술개발·연구 및 녹색경영 등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 ** 금융 분야 : 재무, 회계 등 금융과 관련이 있는 분야											
○ 외부검토에 필요한 직업적·윤리적 원칙 준수할 것(EACI, ISAE 3000, ISO 17021, ISO 14065 등) ※ 공인된 국제원칙 미준수 시 별도 증빙 필요											
취소 요건	○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검토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○ 등록 후 2년 이내에 외부검토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외부검토 실적이 없는 경우 ○ 외부검토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※ 다만,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										
결격 사유	○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최근 3년 동안 100만 원의 이상의 벌금형,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										

붙임 3

일반 회사채 및 녹색채권 발행절차 비교

□ 일반 회사채와 녹색채권 발행절차 비교

<일반 회사채 발행절차>

절차	대상기관	일정
제안요청서(RFP) 발송	발행자 → 금융투자회사	D-17~20
대표주관계약 체결 및 신고	주간사 및 금융투자협회	D-14
신용등급 평가	신용평가사	D-14~10
기업 실사	-	D-13~6
이사회 결의	발행자	D-1~2
채권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	금융위원회	D
수요 예측	금융투자협회	D+1~2
채권 상장 신청	한국거래소	D+7
증권신고서 효력 발생	금융위원회	D+10
채권 등록·발행	한국예탁결제원	D+10
청약 및 납입	-	D+10
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	금융위원회	D+11
채권 상장	한국거래소	D+11

<녹색채권 발행절차>

절차	대상기관	일정	비고
녹색채권 발행계획 수립	발행자	D-50	
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	발행자	D-40~50	환경부 「가이드라인」 부합 4대 핵심 요소 6대 환경목표 작성
적합성 판단 요청	발행자	D-35~30	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요청
사전 외부검토 (관리체계)	외부검토키관	D-35~30	환경부 「가이드라인」 부합 관리체계(GBF) 외부검토
사전 외부검토(적합성판단)	외부검토키관	D-33~30	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당 녹색프로젝트 적합성판단
제안요청서(RFP) 발송 (Request for Proposal)	발행자 → 금융투자회사	D-17~20	
대표주관계약 체결 및 신고	주간사 및 금융투자협회	D-14	
신용등급 평가	신용평가사	D-14~10	
기업 실사	-	D-13~6	
이사회 결의	발행자	D-1~2	
사전 외부검토 업무 완료 (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발급) (적합성판단 확인 완료)	외부검토키관	D-1	
채권 발행	금융위원회	D	증권신고서 제출 ① 관리체계 공시 ②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공시
수요 예측	금융투자협회	D+1~2	
채권 상장 신청	한국거래소	D+7	
증권신고서 효력 발생	금융위원회	D+10	
채권 등록·발행	한국예탁결제원	D+10	
청약 및 납입	-	D+10	
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	금융위원회	D+11	
채권 상장	한국거래소	D+11	
사후(연례·최종) 보고	발행자	D+365~	사후(연례·최종)보고서 ①자금배분, ②환경영향, ③적합성판단 보고
사후 외부검토	외부검토키관	D+365~	사후(최종)보고 외부검토 ①자금배분, ②환경영향, ③적합성판단 최종 확인

※ 상기 일정은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, 실제 채권발행 과정에서 달리질 수 있음